

데이터3법. 핵심은 보호와 활용의 균형



신 금융정보법 ② 법 적용대상의 변화

2020년 8월 20일 시행

감독/검사 기관	개인정보보호위원회 (기존 행안부, 방통위의 역할)	금융위원회
적용법	개인정보보호법 기존 정보통신망법의 개인정보보호규정을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이관	신 금융정보법
적용대상	개인정보처리자 (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포함)	신용정보회사 등 금융회사가 아닌 신용정보제공 · 이용자 통신사, SNS포탈, 온라인쇼핑 등 비금융권으로 적용대상 확대 금융회사인 신용정보제공 · 이용자 본인신용정보회사 =<마이데이터사업자> 신설 신용정보회사 <비금융CB> <개인사업자CB> 신설 채권추심업 신용정보 집중기관
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	개인정보보호위원회 or 지정결합전문기관	신용정보원 or 금융보안원

신용정보법 적용대상인 <신용정보회사 등>은 신용정보제공 · 이용자, 본인신용정보회사, 신용정보회사, 채권추심업, 신용정보집중기관을 의미합니다

신 변화 1 신용정보제공 · 이용자 의 범위가 비금융권으로 확대

신용정보제공 · 이용자 의 정의 개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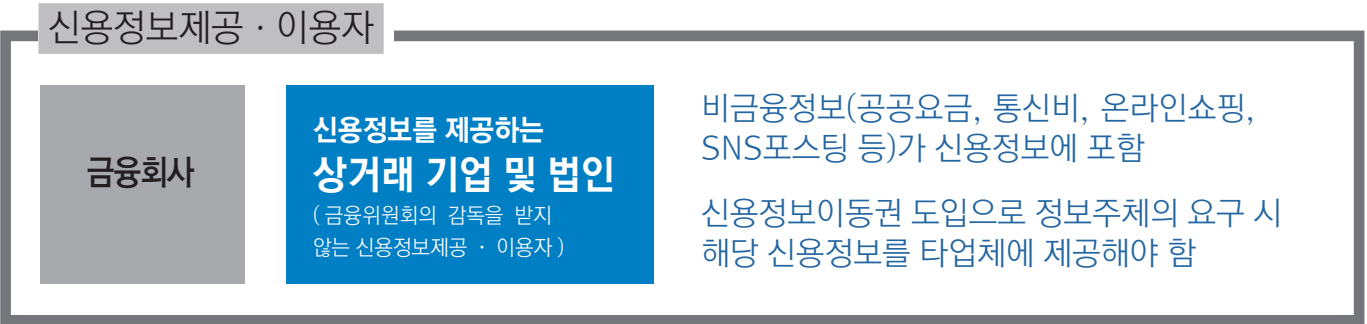
1. 대상을 상거래로 확대 2. 신용정보를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자로 확대

기존

본인과 신용정보주체와의
금융거래를 위하여
신용정보를
처리하는 자

개정

고객과의 금융거래 등 상거래를 위하여
본인의 영업과 관련하여 얻거나 만들어 낸 신용정보를
타인에게 제공하거나 타인으로부터 신용정보를
제공받아 본인의 영업에 이용하는 자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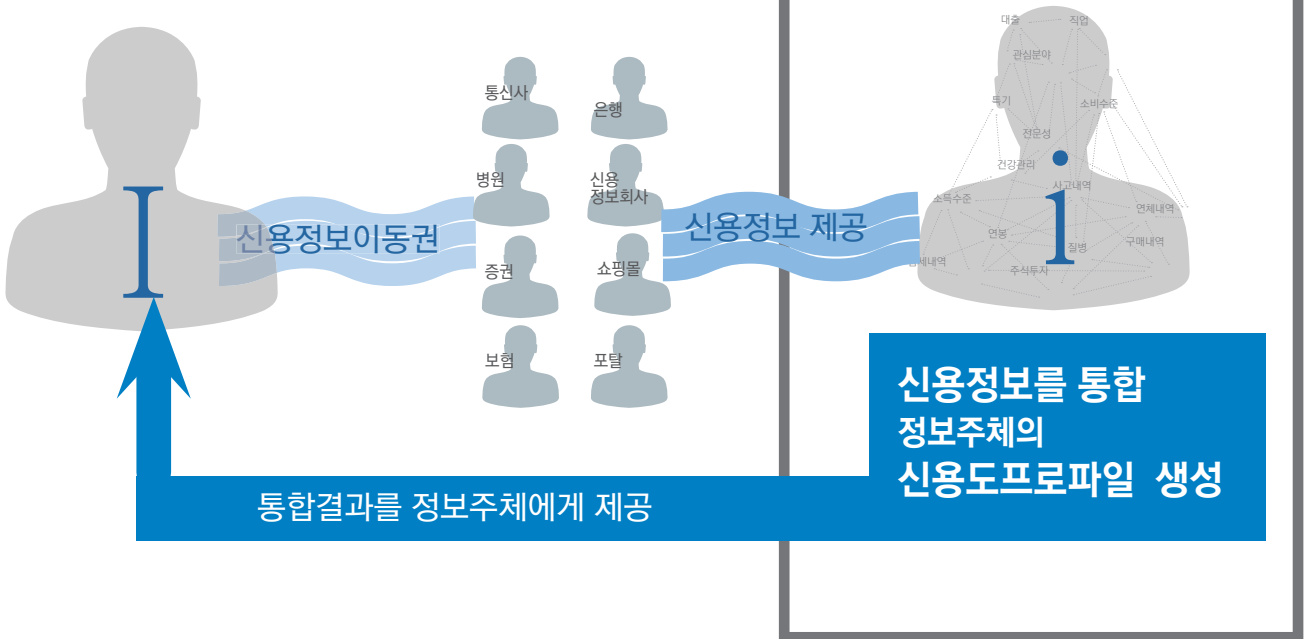
신 변화 2 마이데이터사업자 (= 본인신용정보관리업) 신설

"본인신용정보관리업"이란 개인의 신용정보주체의 신용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신용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으로 통합하여 그 신용정보주체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

정보주체(I)가
신용정보제공 · 이용자들에게
자신의 신용정보(My Data)를
마이데이터사업자에게
제공하라고 요청

금융회사 및 비금융회사인
신용정보제공 · 이용자들이
각자 보유한 My Data를
정보주체가 지정한
마이데이터사업자에게 제공

본인신용정보관리업 마이데이터사업자



이전 리포트보기(2017.10 발송_ GDPR)

신 ^{변화} 3 신용정보회사 를 평가대상에 따라 세분화

신용정보회사

개인신용평가업

개인신용판단을 위한 정보를 수집하고 개인신용상태를 평가하여 개인신용평점 등의 결과를 제3자에게 제공

전문개인신용평가업
= 비금융CB 신설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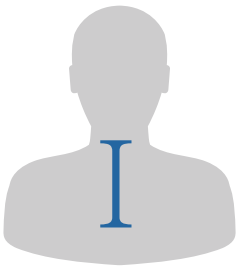
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
= 개인사업자CB 신설

신용조사업 : 제3자의 의뢰를 받아 신용정보를 조사하고, 그 신용정보를 그 의뢰인에게 제공
기업신용조회업 : 기업정보조회, 기업신용등급제공, 기술신용평가

전문개인신용평가업
= 비금융CB 신설

금융거래내역이 부족한 사회초년생, 주부 등을 대상으로
공공요금, 통신비, 온라인쇼핑, SNS포스팅 등
비금융정보로 개인신용을 평가

정보주체가
제3자(은행,
보험, 투자사 등)에
대출, 투자 등을 신청



제3자
(은행 등)이
신용평가를
요청

비금융회사인
신용정보제공 · 이용자들이
각자 보유한 신용정보를
비금융CB에 제공



비금융
신용정보 제공

비금융CB



비금융신용정보를 통합
정보주체의
신용도평가등급 생성

통합결과를 제3자에게 제공

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
= 개인사업자CB 신설

개인사업자(자영업자) 대상으로
신용을 평가

이전 리포트보기 (2017.1 발송_ 신용정보법 적용대상)

(주)소만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신로220 knk디지털타워 9층

Tel: 02 2636 8300 | Fax: 02 2636 8181 | Email: privacy@somansa.com

copyright (c)1997-2020 SOMANSA ALL RIGHTS RESERVED.